

# 보 건 복 지 부

## 시 정 요 구

제 목 긴급의료지원 비급여 진료비 심사청구 소홀

기 관 명 경상남도

관 계 기 관 창원시, 진주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내 용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한 의료지원을 받은 건강보험 가입자(또는 피부양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의료급여법」 제11조의3에 따라 본인일부 부담금 외에 요양기관에 지불한 비용(비급여 또는 전액본인부담진료비)이 요양(의료)급여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급여비용심사기관(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보건복지부지침 「긴급지원사업 안내」에 따르면 2013. 2. 1.이후 긴급의료지원금액 중 비급여진료비의 지원금액이 150만 원 이상인 건에 대하여 보장기관(시·군·구청장)이 긴급의료지원 대상자의 위임을 받아 필요서류를 갖추어 요양기관에서 지불한 비용(비급여 등)이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진료비용 외의 본인부담금의 과다 징수 여부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확인 청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창원시 등 14개 시·군에서는 긴급의료지원대상자 중 요양기관에 지불한 비급여진료비 지원금액 150만 원 이상인 398건(지원기간: 2013. 2. 01.~ 2016. 8. 31.)에 대하여 본인부담금의 적정 청구 여부에 대하여 심사 요청을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창원시장, 진주시장, 사천시장, 김해시장, 밀양시장, 의령군수, 함안군수, 창녕군수, 고성군수, 하동군수, 산청군수, 함양군수, 거창군수, 합천군수는

요양기관에 지불한 비급여 진료비 150만 원 이상인 건에 대하여 과다 징수 여부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확인 요청 등의 조치를 하시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